

제409회 정례회
'23. 6. 9.(금)

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조례
전부개정조례안



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

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김정일 의원 등 7명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23년 5월 26일
- 회부일자 : 2023년 6월 1일

3. 제안사유

- 충청북도 사회서비스원 설립으로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의 기능이 변경됨에 따라, 기존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, 목적, 사업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조례의 제명을 변경함
 - (기존)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조례
 - (변경)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
-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목적을 규정함(안 제1조)
-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을 정비함(안 제3조)
- 센터의 입주대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4조)

5. 검토의견

가. 제출배경

- 충청북도 사회서비스원 설립으로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의 기능이 변경됨에 따라 현행 조례명을 「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」로 개정하는 것을 포함해 현행 조례의 내용을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 검토

- 제명은 법령의 고유한 이름이므로 그 법령의 규율 내용을 가장 잘 나타내는 함축적인 내용으로 간결하게 표현하기 위해, 제명을 「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」로 변경하는 것은 타당하다 할 것임.
- **안 제1조**는 충청북도 사회복지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음.
- **안 제3조**는 충청북도 사회서비스원 설립으로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을 새롭게 규정한 것으로 타당함.

- 안 제4조는 센터의 입주대상을 충북도내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으로 한정하도록 하는 것은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회복지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됨.
- 안 제6조는 센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위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타당함.

다. 종합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 사회서비스원 설립으로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의 목적 및 사업 등이 변경되어 현행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, 법적·내용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.